# 정 식 재 판 청 구 서

사건번호　　2008고약4***　　횡령

(2008형제****)

피 고 인　　성명　*******

주소　**********

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.

피고인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 받은 날짜:　2009. *********

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☒　　어려운 형편에 벌금의 액수가 과다합니다.

2009. *******

피고인　******

## *********지방법원 귀중

***주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. 1주일 경과시에는 정식재판회복청구권 청구와 같이해야 합니다.